

목회연구원 학사 및 생활안내

1. 목회연구원 학칙
2. 목회연구원 시행세칙

목회연구원 학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침례신학대학교 부설 목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봉사 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목회연구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신학대학원: 기독교 신앙의 이론과 실체를 갖춘 목회자로서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케 하여 성숙한 교회, 성숙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선교사 및 교회지도자를 양성한다.
- ② 사모대학원: 목회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함으로 목회사역에 도움을 주어 전문적인 목회자 사모를 양성한다.
- ③ 평신도사역자: 개 교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남녀 구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원하는 자들에게 신학의 기초과목과 성서적, 실천적 원리를 교육함으로써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한다.

제4조(설치과정) 목회연구원에는 신학대학원, 사모대학원, 평신도사역자 과정을 둔다.

제5조(수업방법) 목회연구원의 신학대학원, 사모대학원, 평신도사역자 과정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야간수업과 계절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

제6조(입학 시기) 목회연구원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 자격) ①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사모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교단 및 타 교단 목회자 사모로 한다.

③ 평신도사역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침례(세례)교인으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입학 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

제9조(입학 허가) 목회연구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목회연구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취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전적 학교의 학력이 허위로 확인된 때
- ② 입시요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 ③ 제출한 입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입학에 영향을 주었을 때

제11조(특별전형) 제8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한 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신입생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② 지정기일 내에 전항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개시일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징계제적 된 자와 학업성적의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동일 과정에 재입학 한 자에게는 제적 또는 퇴학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

제14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3 장 등록 및 수업

제15조(재학생 등록) 학생은 매 학기 개시일 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업) 목회연구원의 수업은 각 과정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수업일수 및 휴업일)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 제11조(수업일수) 및 제12조(휴업일)에 준한다.

- ① 수업일수 : 매학년 30주 이상(1학기 15주, 2학기 15주)으로 한다.

단, 총장은 필요할 경우 보강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기방학, 동기방학으로 한다.

제 4 장 수업년한.재학년한.수료 및 졸업

제18조(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① 목회연구원의 수업년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학대학원 3년(6학기), 사모대학원 2년(4학기), 평신도사역자 3년(6학기)으로 한다.
2. 목회연구원의 재학년한은 신학대학원 5년, 사모대학원 4년, 평신도사역자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의 경우 재학년한은 재입학 후 본 목회연구원 수업하여야 할 재학년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졸업및수료) ① 목회연구원 과정의 졸업 및 수료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졸업이라 함은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졸업여건을 모든 갖춘 자를 말한다. 수료는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 하고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다른 졸업 여건에 걸려 졸업을 보류한 자를 말한다. 수료자는 재적생 통계에서 수료자로 분류되며 재학연한 내에 언제라도 졸업여건이 충족 되면 졸업이 가능하다.

③삭제

제 5 장 교과목.학점.시험 및 성적

제20조(교육과정)목회연구원의 교육과정은 목회연구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이를 학칙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21조(이수학점)본 목회연구원 과정의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

제22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이나 이와 동등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대상 교과목의 범위는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

제23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거나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성적평가) ① 목회연구원의 모든 과정은 D학점 이상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학대학원, 사모대학원, 평신도사역자

등급	실점	평점	등급	실점	평점	등급	실점	평점
A+	97-100	4.5	A0	94-96	4.3	A-	90-93	4
B+	87-89	3.5	B0	84-86	3.3	B-	80-83	3
C+	77-79	2.5	C0	74-76	2.3	C-	70-73	2
D+	67-69	1.5	D0	64-66	1.3	D-	60-63	1
F	0-59	0	F	P, NP				

제25조(편입생의 인정 학점) 편입생이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6조(휴학) ① 휴학은 군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기초 지정된 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년한 및 수업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2회 또는 통상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같은 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제27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목회연구원장의 허락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휴학기간 경과된 자가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③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④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⑥ 징계로 제적된 자

⑦ 재학 중 이혼한 자(단, 학칙 시행세칙 제2조 해당자는 제외)

제 7 장 졸업자격 시험

제1절 종합시험

제30조(시험대상) 삭제

제31조(응시자격) 삭제

제32조(응시절차) 삭제

제33조(시험시기) 삭제

제34조(시험과목)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5조(시험방법) 삭제

제36조(시험시간) 삭제

제37조(합격인정) 삭제

제2절 성서종합시험

제38조(시험대상) 신학대학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9조(응시절차) 응시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출제범위) 신·구약성서에서 출제한다.

제41조(시험면제) 본교 학부과정에서 성서종합고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또는 수도침례신학교에서 성서종합고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면제할 수 있다.

(단, 2007학년도 신입생에 한하며,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모든 재학생이 해당됨)

제42조(합격기준)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3조(시험시기) 학기당 1회, 년 2회 실시한다. 단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목회연구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성서종합시험에 대한 세칙은 학부의 학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 8 장 증서수여

제44조(증서수여)①목회연구원의 소정과정에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신학대학원과정 [별지서식 1]과 같다.

③사모대학원과정[별지서식 2]과 같다.

④평신도사역자과정[별지서식 3]과 같다.

제45조(증서수여 심의와 결정) 목회연구원위원회는 증서 수여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수여 자격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6조(증서수여시기)증서수여는 연 2회로 하며, 2월과 8월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장학금, 학생활동 및 상벌

제47조(장학금)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회연구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8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 및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연구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제49조(학생준수사항 및 상벌)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목회연구원장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재학기간을 통하여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목회연구원 학칙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칙개정

제50조(개정절차) ① 학칙 개정안은 소관부서에서 발의하여 목회연구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목회연구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확정·공고한다.

③ 학칙 개정안은 사전에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한다. 단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는다.

제 11 장 직제 및 목회연구원위원회

제51조(직제) ① 목회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연구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제52조(목회연구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회연구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지급 및 학생 상벌과 지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목회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2 장 보칙

제55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56조(시행세칙) 이 학칙 외 필요한 사항은 목회연구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목회연구원 학칙은 폐지한다.

- ② 구 학칙 제31조는 2009-1학기까지만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해 증서를 발급하되 2010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하여 발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2015년 3월 1일 이전 입학한 재학생 학적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 까지)의 성적 기재는 이 학칙을 적용 분류 표시된 성적을 환산하여 표시 기재한다.

목회연구원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학칙의 시행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연구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본 연구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① 신학대학원 과정

가.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사모대학원 과정 : 본 교단 및 타 교단 목회자 사모

③ 평신도사역자 과정: 고등학교 졸업자(남, 여)

※ 신학대학원 과정은 졸업 후 교단 목사안수 및 교단내 상급 정규과정에 진학 가능

제3조(전형방법) 연구원 입학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다.

제4조(입학지원 서류) 연구원의 입학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학대학원

.입학원서(연구원 지정양식) 1통

.소명간증문 1통

.침례(세례)증명서 1통

.교회추천서(연구원 지정양식) 1통

* 침례교단 목사는 제출의무 없음, 총회발행 재직증명서 제출.

단, 타교단 목회자는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 과정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학사 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기혼자인 경우)

② 사모대학원

- .입학원서(연구원 지정양식) 1통
- .담임목회자확인서 1통
- .교회주보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③ 평신도사역자

- .입학원서(연구원 지정양식) 1통
- .소명간증문 1통
- .침례(세례)증명서 1통
- .교회추천서(연구원 지정양식) 1통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제5조(특별전형) 특별전형 대상자의 입학전형은 본 시행세칙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와 구술시험(면접)의 절차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제6조(재입학) ① 제적 전 학점 및 성적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18.2.1).

③ 기타 재입학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입학요강을 심의하는 목회연구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재입학생 수업년간 및 재학년간) 재입학의 수업년간은 재입학전에 등록한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 단 재학년간은 신입학에 준한다.

제8조(편입학) 편입학을 위한 전형방법은 다음 근거를 따르며, 신입학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 ① 자격: 정규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1년 이상).
- ② 편입학기 인정: 편입 희망자의 학기 인정은 최대 2학기까지로 한다.

제 3 장 등록 · 휴학 · 복학 · 자퇴 · 학적부기재사항 변경

제9조(등록) ① 납부된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입학자와 편입학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납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허가를 받아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학점등록)①목회연구원 학칙 제18조 수업년간의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재등록할 경우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② 학점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본 연구원에 개설된 과목 중 총장이 특별히 수강허락을 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15등분한 금액을 학점당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휴학과 등록금)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사무실에 제출한다.

②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을 하는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12조(휴학의 제한) 당해 학기 신입학자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①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하여야 한다. 군복무 휴학자는 복학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 예정자는 연구원사무실에서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고 복학원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4조(자퇴와 등록금 환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목회연구원에 제출하여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

② 다른 대학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 및 신입생으로 합격포기 자

③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후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후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해당학기 개시일(개강)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등록 후 휴학 한 자의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원서에 기록된 일자와 제출일자는 같아야 한다. *제적자와 무기 정학 자의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 표는 완납한 경우로 재학생 중 분납신청자가 해당금을 미납한 경우 반환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5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민등록번호

제 4 장 교과목 및 학점

제16조(학과목의개설 및 개설과목 수) 교과목 개설은 [별표 1]의 교과과정표와 같이 개설하며, 개설 선택과목은 원장이 선별하여 결정한다.

제17조(수강생의 수) 최소수 미만의 수강인원으로 개설할 경우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필수과목과 어학과목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학기당취득학점) 연구원의 각 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최소학점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학기는 이 조항을 예외로 한다.

- ① 신학대학원 : 20학점까지
- ② 사모대학원 : 9학점까지
- ③ 평신도사역자: 9학점까지

제19조(수강신청)

-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 후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③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과목을 재이수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이수할 경우 성적은 무효로 한다. 이미 취득한 교과 성적 중 “D+”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2개 과목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하고 재수강할 수 있다.
- ④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수강신청한 과목은 3/4 이상 출석하여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 실격이 되어 ‘F’처리한다.

제20조(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 ①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지정기간 내에 취소원을 제출한다. 단, 취소 후 나머지 수강과목에 대한 총 학점 수는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다.

- ②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목회연구원장의 허락을 얻어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계절제 수업)

- ① 수업은 전일제 수업으로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설되는 과목의 수강 최소 인원으로 개설할 경우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수한 학점은 당해 학기에 취득한 학점으로 하되, 동 내규 제18조(학기당 취득학점)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개설되는 과목 중 어학 관련 과목에 대한 등록금 외 필요경비는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⑥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자에게 각종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제22조(성적) ① 성적은 학칙 제23조, 제24조에 의거하여 학과목 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성적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목회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중간시험 실시 후 군 입대로 인하여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 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자의 당 학기 취득 성적 전부
2. 시험 중 부정행위 한 해당과목 성적과 계획적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학기 성적 전체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6.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출국 후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은 자가 취득한 학점

제23조(학점인정)

①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목회연구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1. 성지순례에 참여한 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3학점으로 인정한다.

가. 성지순례 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하며 10일 이상 성지에서 머물러야 한다.

나. 성지순례 후 학점인정신청서에 인솔자 확인서, 성지순례 일정표를 첨부하여 목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연구원의 학습목적과 그에 따른 지도아래 타국의 목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회현장실습에 참여한 자에게 2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는 학기별로 개설되는 실습과목의 대체과목으로 하며 목회현장 방문 후 학점인정 신청서에 인솔자의 확인서, 목회현장 방문일정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회연구원 입학 전에 청강하여 취득한 학점과 본 연구원에 입학하였다가 제적된 자가 취득하였던 학점은 인정한다.

④ 신학대학원 입학 전에 동등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을 최고 16학

점까지 목회연구원장이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신학대학원 과정은 목회연구원장의 허락을 받아 선교학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해외 선교지를 돌아보고 부여 받은 과제물을 제출하면 선택학점(선교현장 실습I, II)으로 인정(총2회)할 수 있다. (4주 이상은 2학점, 4주 미만은 1학점)

⑥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에 대해서는 신학대학원 동등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교과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 'B+'학점 이상 32학점까지 목회연구원장이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⑦ 신학대학원생 중 본교 및 수도침례신학교 학부에서 목회실습을 이수한 자는 목회실습 과목을 실천신학분야 선택과목으로 대체 수강할 수 있다.

제24조(학점 및 시간)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복학, 재입학자의 이수학점)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 복학학기 기수의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이나 격학기 개설로 본인이 이수할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학부장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료학기의 인정기준) 각 과정의 수료학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정규등록 학기 수와 수료학기말 시점의 이수학점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제27조(시험) 매 학기마다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며, 정기시험은 매 학기 말에 실시하고, 임시시험은 과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실시한다.

제28조(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연구 성적과 학기말 시험으로서 평가한다.

② 성적 평점 평균은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 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제2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직권으로 취소한다.

1. 시행착오에 의한 성적

2.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전체 성적

3.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4.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6. 시험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② 연구원에 제출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단,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을 청원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출석) ① 학생은 강의 실시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결석일수가 강의 실시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5 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31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목회연구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2조(징계) 1. 연구원은 학칙 제49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징계처분할 수 있다.

-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많은 자
- ③ 시험(과제포함)에 부정을 행한 자
- ④ 학칙을 위반하여 교규를 문란하게 한 자
- ⑤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근신: 반성문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② 유기정학: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징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과 성적은 말소된다.
- ③ 무기정학: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징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과 성적은 말소된다.
- ④ 제적: 일체의 학생자격 박탈

제3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 ①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자
- ②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
- ③ 무기정학을 받고 3년 경과하기 전에 징계해제처분을 받지 못한 자

제34조(학생회 설치 및 승인) 본 연구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신앙심과 학풍을 고취하고,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배 동문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연구원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35조(운영과 활동 및 승인) 원우회의 기본 조직,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안과 그 집행 및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목회연구원장의 지도를 받는다.

- ① 학생들은 학내.외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들의 모든 집회는 지정된 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들의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단체의 조직) 학생들이 단체(예,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목회연구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회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제증명

제37조(제증명 발급)

① 본 연구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재학증명서
- 나. 성적증명서
- 다. 수료증명서
- 라. 재적증명서
- 마. 휴학증명서
- 바. 기타증명서

② 증명서는 본인 신청(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발급한다.

제38조(증명수수료) 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본교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직제 및 목회연구원위원회

제39조(조직)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0조(목회연구원위원회 구성)

- ① 연구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회연구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회 기능) 학칙 제53조(위원회 기능)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칙 제53조(위원회 기능)에서 위임한 사항

- ② 연구원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2조(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침례신학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시행세칙개정) 이 시행세칙은 목회연구원위원회 제청을 받아 목회연구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목회연구원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3.(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5.(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학대학원 교과과정표

* 신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학점	
					1학기	2학기
1학년	1학기	필수	신약성서개론 I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	3	
			진도학	Personal Evangelism	3	
			교회사개론 I	Survey of Church History I	3	
			논문작성법	Form and Style in Writing Paper	P	
	2학기	필수	헬라이어 I	Greek I	3	
			신약성서개론 II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I		3
			목회신학개론	Church Pastoral Ministry		3
			교회사개론 II	Survey of Church History II		3
2학년	1학기	필수	구약성서개론 I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	3	
			선교학	Missions	3	
			조직신학개론 I	Survey of Systematic Theology I	3	
			히브리어 I	Hebrew I	3	
	2학기	필수	구약성서개론 II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I		3
			설교학	Preaching		3
			조직신학개론 II	Survey of Systematic Theology II		3
			히브리어 II	Hebrew II		3
3학년	1학기	필수	목회실습 I	Field Practice of Church Ministry I	2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3	
			교육목회론	Educational Ministry in the Church	3	
			침례교회사	Baptist Church History	3	
			종교철학	Philosophy of Religion	3	
	2학기	필수	목회실습 II	Field Practice of Church Ministry II		2
			구약신학	Old Testament Theology		3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3
			기독교윤리	Christian Ethics		3
			침례교신학	Baptist Theology and Distinctives		3

1. 필수과목: 76학점
2. 자유선택: 18학점(매학기 개설)
3. 이수학점 총계: 94학점(필수 + 선택)

[별표 2]

목회연구원 수료학기 인정 기준

가. 신학대학원(6학기 과정)

과 정	석 사 과 정						비 고
수료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5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이수학점	13	26	39	52	65	74	

나. 사모대학원(4학기 과정)

과 정	사 모 대 학 원				비 고
수료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이수학점	6	15	21	30	

다. 평신도사역자(6학기 과정)

과 정	평 신 도 사 역 자						비 고
수료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5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이수학점	9	18	27	36	45	54	

목회연구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시행세칙 제 8조에 관련하여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편입학 자격은 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원을 졸업, 휴학, 자퇴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

② 평신도사역자 졸업자가 학사학위 취득 후, 신학대학원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부(신학과)로 편입, 학점을 취득한 자도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조(모집인원) 00명으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제4조(모집 시기) 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기초 30일 이내에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전형) ①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목회연구원 교학과에 소정의 편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6조(편입학지원서류) 목회연구원 편입학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소명간증문 1통

.침례(세례)증명서 1통

.교회추천서(연구원 지정양식) 1통

(*침례교단 목사는 제출의무 없음, 총회발행 재직증명으로 대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기혼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통

제7조(학점인정) 최대 인정 학점을 B학점 이상인 과목을 최고 32학점까지 인정한다.

① 단, 신학대학원에 개설된 필수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필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

② 평신도사역자 졸업자가 학사학위 취득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 평신도사역자과정에서 기취득한 학점 중 32학점 인정

제8조(입학취소) 편입학 자격에 미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된 것이 확인되면 편입학을 취소 또는 제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회연구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목회연구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년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교육제도에 의한 수학 년한(신학대학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앙생활에 결격이 없는 자,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2.5(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만점의 7할) 이상이며 과락이 없는 자 중에 선발한다(개정 2017.2.1).

② 장학금 수혜를 위한 최저학점은 9학점이며, 강의시간표에서 정해진 내역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7.2.1).

③ 당연직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취득 기준일은 학기 개강 전일까지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은 대학이 정한 장학지침에 따라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⑤ 기타 원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대상자) ① 장학금 지급 및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에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장학생수) 교내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수와 지급 금액은 목회연구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신청을 공고한 기일내 목회연구원 사무실에 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수급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①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학칙 29조, 46조)

② 타교에 전.입학을 하는 자

③ 휴학 중인 자(학비감면 학생은 제외)

④ 기타 장학생으로 추천이 제외된 자

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⑥ 당연직 장학금 지급대상자(예: 부부장학금 등)라 하더라도 과정별로 동일한 명칭의 장학금은 1개 과정에 한 한다

제9조(장학금의 환불 및 반환) ① 장학금으로 학비감면을 받아 등록을 필한 후, 자퇴하거나 타교로 편. 입학하는 자는 장학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②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는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2.1).

가) 징계를 받은 자

나) 자격 요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17.2.1).

부 칙

제1조(시행세칙 및 선발원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칙 및 선발원칙은 목회연구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목회연구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목회연구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2.1).

장학금 지급 규정에 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5조에 의거 제정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지급 내용)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내용은 별지와 같이 시행한다(개정 2017.2.1).

제3조(근로 및 기술장학생의 근로시간) ① 근로 및 기술장학생에게는 주당 7시간 이내의 근로를 부여 한다(개정 2017.2.1).

② 근로장학금의 수혜자로서 대학이 위임하는 근로를 이행치 못했을 때는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런 학생은 차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근로장학생의 근로 횟수 제한) 재학 중 근로장학생의 선발 횟수는 4회까지로 제한한다(개정 2017.2.1).

제5조(신학대학원과정 장학금) ① 신학대학원과정의 장학금 지급 종류는 규정에 따라

- 가) 학업우수 장학금(성적우수)
- 나) 근로장학금(6학기 재학생 제외)
- 다) 기술장학금
- 라) 임원장학금
- 마) 부부장학금
- 바) 총회소속 각 기관 전임사역자 장학금
- 사) 특별장학금
- 아) 목회자부인장학금
- 자) 목회자자녀장학금
- 차) 선교사(자녀포함)장학금

② 신학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종류별 세부사항은 학부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2.1).

③ 학생생활준칙 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장학금의 중복 지급 금지) 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단, 기술장학생이 학업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와 외부지정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내규의 미비 사항은 목회연구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2.1).

별지) 목회연구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내용

장학금의 종류	대상자	제출서류	지급금액
성적장학금	각 학년별 과수석 학생		수업료의 50%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2.5이상으로 본교가 위임하는 근로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학생. 단 최종학기는 제외		지정금액 (월 10만원x3회)
기술장학금	학교 컴퓨터 관련 소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학생. 단 최종 학기는 제외		지정금액 (월 10만원x3회)
부부장학금	신학대학원과정에 부부가 등록할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 (해당학기 개강일 이후에 결혼한 경우 해당 안됨)	혼인관계증명서	수업료의 50%
임원장학금	원우회장, 총무		수업료의 50%
	원우회부장		수업료의 13%
총회소속 각 기관 전임사역자 장학금	침례교단 소속의 기관에 근무(유급)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3.0이상인 학생 (해당학기 개강일 이후에 부임한 경우 해당 안됨)	총회발행 재직증명서	수업료의 40%
특별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정금액
목회자부인 장학금	침례교단 소속 목회자 배우자(해당학기 개강일 이후에 결혼한 경우 해당 안됨)	총회발행재직증명서, 교회주보, 주민등록등본	수업료의 13%
목회자자녀 장학금	침례교단 소속 목회자 자녀 중 미혼인 학생	총회발행재직증명서, 교회주보, 주민등록등본	수업료의 13%
선교사(자녀포함)	침례교단 소속 선교사(선교사자녀) (해당학기 개강일 이후에 소속된 경우 해당 안됨)	FBM 발행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업료의 50%

서비스 안내

1. 학생증

- (1) 등록을 필한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목회연구원사무실에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2) 학생증을 분실한 자는 재발급 신청서와 수수료를 목회연구원사무실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는다.
- (3) 학적 변동자(휴학, 제적, 자퇴, 정학 등)는 학생증을 목회연구원사무실에 반납한다.

2. 각종 증명서 발급

- (1) 발급 가능 증명서(영문포함)
졸업(예정), 재학, 제적, 수료, 성적
- (2) 발급 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우편신청을 한다.

3. 집회신고서

- (1) 집회허가신청서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집회전날 오전까지 목회연구원사무실로 제출한다. 단, 재학생의 외부행사(외부강사 초청)는 행사 4일전 목회연구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신청한다.
- (2) 학교시설물신청서
(1)번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단, 외부단체행사, 공휴일의 학교시설물 사용 신청은 목회연구원사무실로 한다.

4. 각종 업무

- (1) 휴학·복학·자퇴접수
 - ① 휴학 : 개강 전까지 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가능, 개강 후 휴학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군휴학자 제외)
 - ② 복학 : 전역자는 전역증 지참 후 복학서류작성, 일반휴학자는 휴학 후 1년 이내 복학신청(미복학시 제적)
 - ③ 자퇴

항목(신입학 및 재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개시일(개강)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3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p>*등록 후 휴학 한 자의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원서에 기록된 일자와 제출일자는 같아야 한다.</p> <p>*제적자와 무기 정학 자의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p> <p>*이 표는 완납한 경우로 재학생 중 분납신청자가 해당금을 미납한 경우 반환금에서 이를 공제한다.</p>	